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(월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1. 김경이의원 외 13명 발의 (의안번호 172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3. 9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경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일·가정 양립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의회 의원의 출산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제한적인 상황임.
- 성북구의회 의원이 임신·출산 시 출산 전·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일·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.
-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을 반영하며 기존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차 및 결석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 반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원이 체포, 구금 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)

- 임신 중인 의원의 창가 및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제3항)
-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8조 제4항)
- 의원의 청가 기간 경과 후 불출석 때 관련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, 위원회 불출석 때 관련 규정을 신설 함 (안 제8조 5항, 제8조 6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
 - 기간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 - 의견 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한상규)

- 안 제8조 제1항 단서 신설 은 의원이 체포, 구금 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였고
- 안 제8조 제3항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.후 휴가를 주는 규정으로 「근로기준법」¹⁾ 제74조(임산부의 보호) 및 「지방 공무원복무규정」²⁾ 제7조의7(특별휴가)에 의거 출산에 따른 의원의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
- 안 제8조 제4항은 배우자에게 출산 때 휴가를 주는 신설 개정안으로 「남녀고용평등법」³⁾ 제18조의 (배우자 출산휴가)」과 근로기준법,

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와 출산에 따른 의원
의 출산휴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기 위한 신설 개
정안이고

-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 조례 개정안은 의원의 청가 기간의 경과규정
및 회기 기간 중 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출석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
「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」 안 제7조 (지방의원의 결석,
지방의원의 청가)에 성북구의회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내용을 포괄
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,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여 규정의 중복을 방
지하고자 하였음
- 검토 결과, 본 조례 일부개정(안)은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타
당 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(월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1. 김육영의원 외 10명 발의 (의안번호 173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3. 9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육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이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(시행 2023. 6.28.됨)에 따라 만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며
-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, 조례 본문 체계상 인용조문의 오류를 수정함

나. 주요내용

- “만” 표시 용어를 삭제함 (안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7항)
- 상위법령의 제·개정사항 반영함 (안 제24조제11호, 제25조제8항)

- 인용조문 변경 및 오류사항을 정비함 (안 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9조, 제2조부터 제23조까지, 제29조, 제3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한상규)

- 안 제25조는 「민법」⁴⁾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<시행 2023. 6. 28.>, 「행정기본법」⁵⁾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는 ‘만 나이’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고
- 안 제24조제11호 및 제25조 8항은 「검역법」⁶⁾ 제5조제1항 (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)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⁷⁾ 등 상위법 내용을 반영 하였으며,
- 안 제29조 및 제30조는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 제10조 (영리업무의 금지)

4) 민법 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5) 행정기본법 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6) 검역법 제5조(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)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 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(이하 “검역관리지역등”이라 한다)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, 2020. 8. 11.>

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·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20. 3. 4.>

7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칙 <제31709호, 2021. 6. 1.>

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및 제11조(점직 허가)제1항에의거 상위법에 따라 규정을 개정함.

- 기타 개정안은 본문 체계상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여 시민의 자치 법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
- 검토결과, 본 조례 일부개정(안)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18.(월)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1. 경수현의원 외 11명 발의 (의안번호 174호)

나. 회부일자: 2023. 8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【2023. 9. 1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경수현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」 위원회의 회의 사항중 일부를 상위법 (지방공무원법 제10조)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규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4조 (위원회의 회의)
 - 위원회의 회의 구성 인원 지정 (제4조 2항)
 - 위원회의 회의 출석 인원 변경 (제4조 3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

○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○ 입법예고 : 2023. 8. 21. ~ 2023. 8. 26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한상규)

-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위원회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 안건으로
- 안 제4조 제2항은 회의 구성인원 으로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의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규칙 신설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
- 안 제4조 제3항은 회의 출석인원으로
 - 「지방공무원법 제10조 제3항」 9) 에 의거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인원 및 의결 규정으로 또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음
- 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지방공무원법 제10조(인사위원회의 회의)

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(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)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2. 3. 21.>

2)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